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02
----------	-------

발의연월일 : 2025. 12. 12.

발 의 자 : 복기왕 · 최혁진 · 이상식
어기구 · 정준호 · 김남희
전용기 · 이강일 · 문진석
김우영 · 정태호 · 한병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에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자동차 대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아울러 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및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터미널사업자가 인가받은 공사를 끝낸 이후 시설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 약관을 미신고·미준수한 경우 및 시설사용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및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며,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자 등이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 확인을 받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약관을 변경한 경우
2.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터미널사업자가 사용약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터미널사업자가 시설사용료에 관한 인가

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49조의3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6. 제49조의10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제91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제42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한정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2조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84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의3 중 “제34조의2제2항”을 “제3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1의2. 제10조제1항 단서·같은 조 제2항 단서(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9조의3제6항 단서 또는 제49조의10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91조제5호 및 제92조제2호·제3호·제13호·제14호·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①·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터미널사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지 <u>아니한</u> 경우 그것을 시정(是正)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42조(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아니하거나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 확인을 받지 아니한</u> -----.
<신 설>	제84조의2(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약관을 변경한 경우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2.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터미널사업자가 사용약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터미널사업자가 시설사용료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49조의3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6. 제49조의10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제91조(벌칙) ----- ----- -----
--	--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5.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u>동차대여사업자</u> 6. · 7. (생 략)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 제 2. 제9조제1항(제49조의9 및 제 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송약 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 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 니한 자 3. 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49조의3 제6항 또는 제49조의10제2항 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 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4. ~ 10의3. (생 략) 11. · 12. 삭 제 1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 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 7. (현행과 같음) 제92조(벌칙) ----- ----- -----. <삭 제> <삭 제> 4. ~ 10의3. (현행과 같음) 13. 제42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 령(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
---	--

<u>널 사용을 시작한 자</u> 14. <u>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약관을 위반한 자</u> 15. <u>제41조에 따라 시설사용료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u> 16. (생 략) <u><신 설></u> 제94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u><신 설></u> 2. ~ 6의2. (생 략) 6의3. <u>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한</u>	<u>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한정한다)</u> <u>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u><삭 제></u> <u><삭 제></u> 16. (현행과 같음) 17. <u>제84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제9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1의2. <u>제10조제1항 단서·같은조 제2항 단서(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9조의3제6항 단서 또는 제49조의10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u> 2.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u>제34조의2제1항 또는 제2</u>
--	--

자동차대여사업자 6의4. ~ 16. (생략) ③ ~ ⑤ (생략)	<u>항</u>----- 6의4. ~ 1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